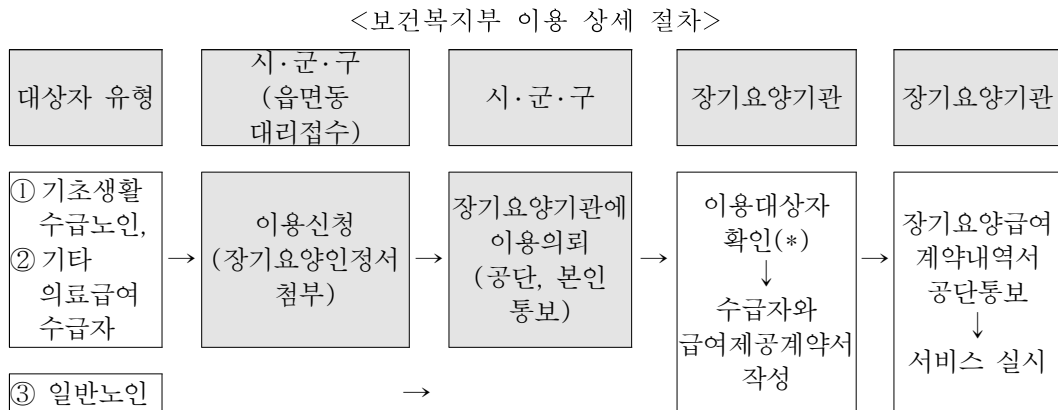


제9장 이 용 계 약

제62조(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이용 절차에 따라 이용

시설 이용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 이용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이용 조치하는 경우 이용시설 결정은 이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이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이용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용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이용의뢰 가능
- 3) 이용결정한 시군구는 이용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이용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 이용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제63조(구비서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 건강진단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 ④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⑥ 기타 입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4조(이용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③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 ④ 이용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 ⑤ 이용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이용보증금은 수납하지 아니한다.
- ⑥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비급여 항목은 물가의 상승률 기타 변화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변경한다.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 ⑦ 계약서 - 이용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⑧ 계약서 부분 발부 - 이용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본인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 3. 다른 이용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4. 직원 및 동료 이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이용자의 안전성 요구 및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4.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 ③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④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이용자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며,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산출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건강진단서) 이용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용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68조(위생관리)

-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허가된 약품 등으로 소독한다.
-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 소독 등을 실시한다.
-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제10장 이 용 료

제6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이용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023년 1월1일 기준(단위:

원)

이용시간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8,630	5,795

~ 6시간 미만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1,510	4,727
	5등급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15%발생함.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